

2022년도 시행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적용요령)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세 정책 관

I 지방세기본법

1. 연계정보통신망 전자신고 법령근거 보완 [법 § 2·§ 25]	1
2. 경정청구 처리 지연 시 통지의무 신설 [법 § 50]	5
3.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법 § 60, 영 § 37]	9
4.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법 § 62①, 영 § 43①]	14
5. 고충민원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 [법 § 62③, 영 § 43③]	22
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 [법 § 82]	24
7. 압수물건 인계 주체 사법경찰관 추가 [법 § 125]	26
8.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공대상 추가 [법 § 152의2, 영 § 94의2]	28
9. 가산세 가산금 통합 등 시행시기 유예 [시행 전 법률 부칙 개정]	31

II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 기한연장 사유 재해의 명확화 등 [영 § 6]	43
2.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 확대 [영 § 9]	47
3. 불복 등 지방세환급가산금 계산 합리화 [영 § 43]	49
4. 지방세조합의 사무 및 제반사항 규정 [영 § 3, § 82 등]	51
5.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영 별표1]	58

III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서식 개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제31호 서식]	61
---	----

지방세기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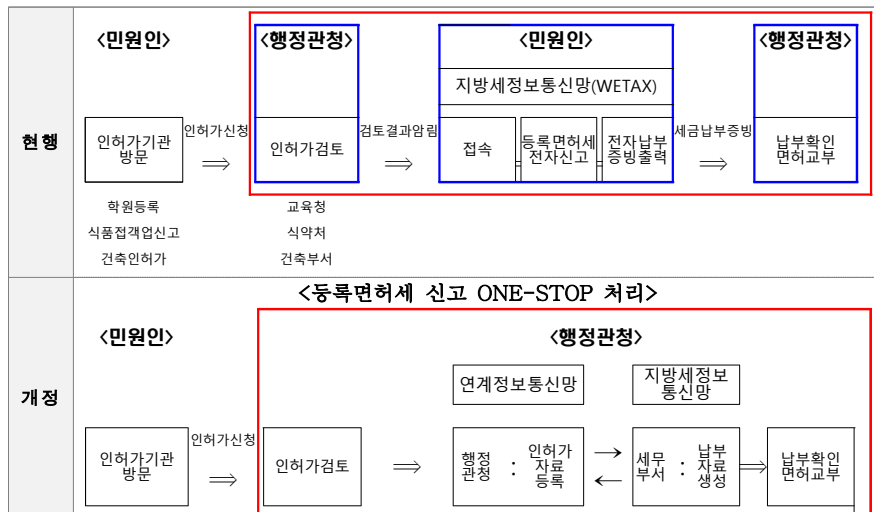
1 연계정보통신망 전자신고 법령 근거 보완(법 §2조, §25)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전자신고 수단 정보통신망 ☐ 지방세정보통신망 ☐ <신 설>	☐ 전자신고 활용 정보통신망 확대 ☐ (현행과 같음) ☐ <u>연계정보통신망*</u> *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

□ 개정내용

- 납세자 신고 편의 및 향후 다양한 방식의 전자신고 제도 도입을 위해 **현행 전자신고 대상 시스템인 지방세정보통신망**에 더하여,
 - 지방세 관계 인·허가기관의 행정 시스템 등의 **연계정보통신망***을 추가함으로써 전자신고·납부확인이 가능하도록 **법률 근거 마련**
- *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



□ 적용요령

-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신고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2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 -----.
1. ~ 28. (생략)	1. ~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8의2. “연계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또는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9. “전자신고”란 과세표준 신고서 등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관련 서류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29. ----- ----- 이 법이나 ----- -----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
30. (생략)	30.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31. “전자송달”이란 <u>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이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이하 “연계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송달을 하는 것을 말한다.</u>	31. ----- <u>이 법이나</u> ----- ----- <u>연계정보통신망</u>-----
32. ~ 36. (생략)	32. ~ 36.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생략)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신고서 등을 <u>지방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 등이 지방세정보통신망에 저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u>	② ----- <u>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u>----- ----- <u>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법 제30조제9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지방세환급금 지급통지서, 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결정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법에 따른 송달을 위하여 지방세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로 한다.	제15조(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 - ----- ----- ----- ----- ----- -----, --- <u>연계정보통신망</u> ----- ----- ----- ----- -----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신고서 등을 <u>지방세정보통신망</u> 을 이용하여 제출(이하 “전자신고”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u>지방세정보통신망에서</u>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3조(전자신고의 방법·절차 등) ① ----- --- <u>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u> ----- ----- <u>지방세정보통신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에서</u> ----- -----.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과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 심판청구나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가 지방소득세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⑥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5항----- 제4항----- ----- 특별징수의무자나 -----

개정 전	개정 후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에 따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또는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8,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를 통하여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해당 특별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자”로 본다.	----- 명세서나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⑤ (생 략)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3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법 § 60③, 영 § 37조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환급금의 발생 시기 ○ <신 설> ※ 지방세 환급금 발생 시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며, - 법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에서 각호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환급가산금 기산일로 규정하면서, 그 각호의 날을 환급금 발생시기로 운영중	□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 신설 ○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신설 - 대통령령(§37조의2) 위임 < 영 제37조의2 신설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등* *특별징수 납부 시 신고기한 만료일 분납 등의 경우 마지막 납부일 2호) 연납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 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폐지일 * 양도 후 납부한 경우 등은 납부일 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 4호) 적법 납부 후 법령·조례 개정 : 개정 법령·조례의 시행일 5호) 환급세액 신고, 신청, 결정·경정 : 신고·신청일 등* * 환급세액 미신고 결정 시 결정일 6호) 연말정산·특별징수 납부 지방소득세에 대한 법§50④에 따른 경정청구 : 연말정산·특별징수 납기 만료일

□ 개정내용

-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권리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환급금 발생일 규정 신설

*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 지방세환급금 충당 시 납부의무 소멸 시기 등

- 현행 체납액 충당 시 납부의무 소멸 시기인 체납 지방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법 제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날 중 늦은 때를,
-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영 제37조의2에 위임 규정함

<참고> 발생 원인별 지방세환급금 관련 법령(개정령안 및 운영예규 포함) 비교

환급사유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 기산일
구분기준	환급금이 발생한 때	환급가산금 지급의 기간 기준점(초일)	환급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일	납부일의 다음날	납부일
신고부과의 취소경정	납부일	납부일의 다음날	부과취소·경정일
자동차세 연납 일할	이전등록일 등	이전등록일 등의 다음날	이전등록일 등
납부 후 감면결정	감면결정일	감면결정일의 다음날	감면결정일
납부 후 법령개정	시행일	시행일의 다음날	시행일
환급세액 (담배세 등)	환급신고·신청일 (미신청 시 결정일)	환급신고·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미신청 시 결정일)의 다음날	환급신고·신청일 (미신청 시 결정일)
국세 통보 지방소득세	납부일	지자체장 결정·경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납부일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체납액 등에 충당하는 경우 부터 적용
- 이 영 시행('22.1.1.) 전에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충당에 관하여는 제37조의2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지방세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에 따름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② (생략)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 -----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 -----.
④ ~ ⑩ (생략)	④ ~ ⑩ (현행과 같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7조의2(지방세환급금 발생일) 법 제6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환급금 발생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그 납부 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 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

개정 전	개정 후
	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 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 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 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 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 부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歲額)을 일시납부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 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 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 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 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 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 정일

개정 전	개정 후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 (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일.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로 한다. 6. 특별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이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특별징수세액의 납부기한 만료일

4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법 § 62①, 법 § 43①)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 경정청구 시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사유별로 법률에서 각호를 두어 직접 규정 < 법 제62조제1항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6호, 7호제외) 2호) 연납 자동차세 일할계산 환급 : 이전등록일, 양도일, 사용폐지일 * 양도 후 납부한 경우 등은 납부일 3호) 적법하게 납부 후 감면 발생 : 감면 결정일 4호) 적법납부 후 법령·조례개정 : 법령 또는 조례 시행일 5호) 환급세액 신고, 잘못된 신고 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6호제외) * 무신고 환급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6호)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 경정청구일 * 납부일이 경정청구보다 늦은 경우 납부일 7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환급결정일 30일 지난 날	□ 지방세환급가산금 기산일 조정 ○ 경정청구 시에도 납부일 등*의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 계산 * 종전 6호 삭제 → 1호 및 5호 적용 ○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사유별로 규정 신설 < 영 제43조제1항 신설 > 1호) 착오납부, 이중납부, 경정·취소 : 납부일 (6호<종전 7호>제외) 2호) (현행과 같음) 3호) (현행과 같음) 4호) (현행과 같음) 5호) 환급세액 신고, 신청, 결정·경정 : 신고일 30일 지난 날 <삭 제> 6호) 세무서장 통보 지방소득세 등 : 결정·경정일 30일이 지난 날

□ 개정내용

- **경정청구 환급 시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납부일 등으로 개정하여 조세체계의 통일성 및 납세자 권익 제고***

* 경정청구 시 환급가산금을 국세 납세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함

※ 현행 법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구성 체계를 효율화(국세도 동일)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 영 제43조제1항제1호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2.1.1.) 전에 경정청구되어 이 영 시행('22.1.1.) 이후 그 결정에 따라 산정하는 지방세환급가산금에 대해서도 적용
- 영 제43조제1항제5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2.1.1.)이후 환급세액을 신고하거나 환급신청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결정·결정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

* 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한정

②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제60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는 날이나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개정 전	개정 후
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과 금융회사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지방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지방세의 납부일. 다만, 그 지방세가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특별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年稅額)을 일시납

개정 전	개정 후
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日割計算)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일 경우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지방세환급금의 경우에는 그 법령 또는 조례의 시행일 5.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또는 잘못된 신고에 따른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한 날(법정신고기일 전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	

개정 전	개정 후
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제50조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경정청구일(경정청구일이 지방세 납부일보다 이른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일)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 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u><신 설></u>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나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그 지방세의 납부일(지방세관계법에 따라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의 환급의 경우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 이 경우 지방세가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분할고지로 둘 이상의 납기가 있는 경우와 지방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지방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지방세의 각 납부일로 한다.

개정 전	개정 후
	2. 「지방세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130조에 따른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환급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다만, 납부일이 소유권이전등록일·양도일이나 사용을 폐지한 날 이후인 경우에는 그 납부일로 한다. 3. 적법하게 납부된 지방세의 감면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감면 결정일 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또는 조례가 개정되어 환급하는 경우: 그 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의 시행일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환급세액의 신고, 환급신청이나 신고한 환급세액의 경정·결정으로 환급하는 경우: 그 신고일(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 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 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지방세관계법에서 환급기한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기한의 다음 날). 다만, 환급

개정 전	개정 후
	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없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거나 경정한 자료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나. 「지방세법」 제103조의62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다. 「지방세법」 제103조의64제3항제2호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

5 고충민원 환급 시 환급가산금 지급 제외(법 § 62③, 영 § 43③)

1 개정개요

※ 국세 일치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 지방세환급가산금 지급 예외 신설 ○ 경정·불복 청구 등*의 절차 없이 고충민원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 제외 * 경정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 개정내용

- 납세자의 경정청구나 불복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을 통해 과세관청이 직권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 지급을 제외함
 - 경정청구, 불복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로서 직권 취소, 변경 등을 하는 경우에 한
- ※ 국세도 '20년말 개정하여 동일하게 시행중(국세기본법 §52③ 및 영 제43조의3③)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세환급가산금에 관하	제62조(지방세환급가산금)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개정 전	개정 후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제50조에 따른 정정 등의 청구 2.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u><신 설></u>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③ 법 제6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충민원”이란 지방세와 관련하여 납세자가 법 제62조제3항 각 호의 불복청구 등을 그 기한까지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직권으로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의 취소, 변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사유 신설(법 § 82조)

1 개정개요

※ 국세 일치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 세무조사 대상선정 ☐ 정기선정 - 신고성실도 분석 불성실 혐의 - 4년 이상 비조사 중 검증 필요 - 무작위 추출 표본조사 ※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필수 ☐ 수시선정 - 신고 등 납세협력의무 미이행 - 구체적인 탈세제보 - 명백한 신고 탈루·오류 혐의 - 납세자의 세무조사 신청 - <신 설>	☐ 세무조사 대상선정 합리화 ☐ (현행과 같음) ☐ 수시선정 사유 신설 (현행과 같음) 무자료·위장·가공 거래 혐의 납세자의 금품 제공·알선

☐ 개정내용

- 무자료, 위장·가공 거래 등 사실과 다른 거래 혐의가 있는 경우 및 납세자가 금품을 제공한 경우 등을 조사대상 수시선정 사유 추가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2.1.1.) 이후 세무조사 대상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생략)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설>	5.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설>	6.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7 압수물건 인계 주체 사법경찰관 추가(법 § 125조)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범칙사건 압수물건 인계 대상 ☐ 검사(檢事) ☐ <신설>	☐ 압수물건 인계 대상 추가 ☐ (현행과 같음) ☐ 사법경찰관

□ 개정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범칙사건과 관련하여 대상자를 고발하고 압수한 물건이 있는 경우,
 - 검사로 한정된 압수물건 인계 대상에 검·경 수사권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사법경찰관을 추가함

<지방세범칙사건 고발 시 수사개시 권한>

구분	'20. 12. 31. 이전	'21. 1. 1. 이후
조세 포탈 가중처벌 대상(5억원 이상)	검찰	검찰
기타 조세 범죄	검찰	경찰

<검·경 수사권 조정 주요내용>

구분	검찰	경찰
상호관계	상하 지휘관계 →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 위한 협력관계	
수사권한	검찰 송치 이전 수사지휘 불가 ※ 사건 송치 받은 후 보완수사 요구는 가능	1차적 수사권 부여
수사종결권한	불송치 결정 시 재수사 요구 가능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 불송치 결정 시 검찰에 결정문 통지
직접수사범위	일부 중요범죄만 직접수사 * 부패·경제·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 등 제한	고소·고발·진정 사건 전담 처리
기타사항	'21.1.1.부터 시행, 자치경찰제 점진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공포일: '21.12.30) 이후 압수물건을 인계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4조에 따라 고발한 경우 압수물건이 있을 때에는 압수목록을 첨부하여 <u>검사</u> 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25조(압수물건의 인계) ① ----- ----- ----- ----- <u>검사</u> 또는 <u>사법경찰관</u>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5조 제4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u>검사</u> 에게 보관증을 인계하고, 소유자등에게 압수물건을 <u>검사</u> 에게 인계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 ----- -----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 -----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u> -----.

8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제공대상 추가법 § 152조의2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신 설> ☐ 제공요청 가능한 경우* - 상속인의 피상속인 납세의무 승계 -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여 - 주된 상속자에 대한 사망자환급금의 지급 - 적부심 및 이의신청 지위 승계 신고 허가 ☐ <신 설>	☐ 가족관계전산정보 활용 확대 ☐ 제공요청 가능한 자 - (현행과 같음) - <u>행정안전부장관</u> ☐ (현행과 같음) ☐ <u>행안부장관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지자체장에 제공 가능</u>

☐ 개정내용

- 가족관계전산정보 제공요청 주체에 행안부장관을 추가하고 지자체장에 제공하는 방법 등을 규정

☐ 적용요령

- 이 법 시행('21.1.1.) 이후 법원행정처장에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의 공동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152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등록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제94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2조의2제2항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

개정 전	개정 후
	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등록전산정보자료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9 가산세 가산금 통합 등 시행시기 유예(법률 제16854호, 제17768호 부칙)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차세대지방세시스템 ☐ 개통일 및 법령 시행시기 - '22. 2. 3.	☐ 차세대시스템 개통 연기 ☐ 개통일 및 법령 시행시기 - '23. 1. 25.
☐ 가산세·가산금 통합 ☐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식 변경 시행시기 - '22. 2. 3.	☐ 가산세·가산금 통합 유예 ☐ 납부지연가산세 및 가산금 통합 시행 유예 - '24. 1. 1.

□ 개정내용

- 차세대지방세시스템 개통일 변경에 따라 시스템 관련 법령 및 가산세·가산금 통합 규정 시행시기를 유예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용어 등은 '23.1.25.부터, 납부지연가산세 및 가산세·가산금 통합 관련 규정은 '24.1.1.부터 시행함

□ 적용요령

- 현행 납부지연가산세 및 가산금 체계를 '23.12.31.까지 유지함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1항제28호부터 제31호까지, 제24조제2항, 제25조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30조제8항, 제32조 단서, 제33조제2항, 제8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130조제1항, 제135조,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8조 및 제145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2월 3일 2. 3. (생략)	법률 제16854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1. 제2조제1항제28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 ----- ----- ----- ----- ----- ----- ----- 2023년 1월 25일 2.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 ----- ----- -----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34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 ----- ----- -----.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법률 제17768호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5호--- ----- ----- ----- -----.

참고 '20년 납부지연가산세 개정사항 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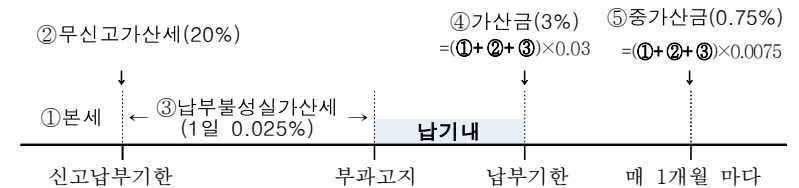
1 납부불성실가산세·가산금 통합 및 용어 등 정비

개정 전		개정 후	
가 산 세	무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가 산 세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가 산 금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25%)	납부부과고지 전(1일 0.025%)	가 산 세
	가산금(1회 3%)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1회 3%)	
	증가산금(매월 0.75%)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매월 0.75%)	

※ 특별징수불성실가산세도 동일하게 명칭, 산정방식 등 정비

<개정 전 제도의 주요내용>

- (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납부 세목을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할, 지방세기본법§55)
- (가산금) 지방세(전 세목)를 납부고지서 상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시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1회, 지방세징수법§30)
- (증가산금) 지방세(전 세목)를 납부기한 이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체납후 매 1개월) 고지세액에 추가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월할, 지방세징수법§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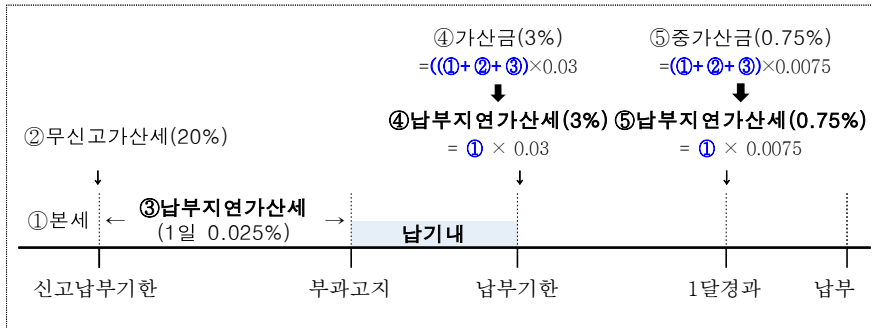


① 명칭 일원화 및 순화

- (명칭일원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증)가산금을 가산세로 통일하여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이중 부과 등 오해 불식
- (명칭순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보다 적합한 의미를 가진 명칭으로 순화(불성실→지연)하여 납세자의 부정적 인식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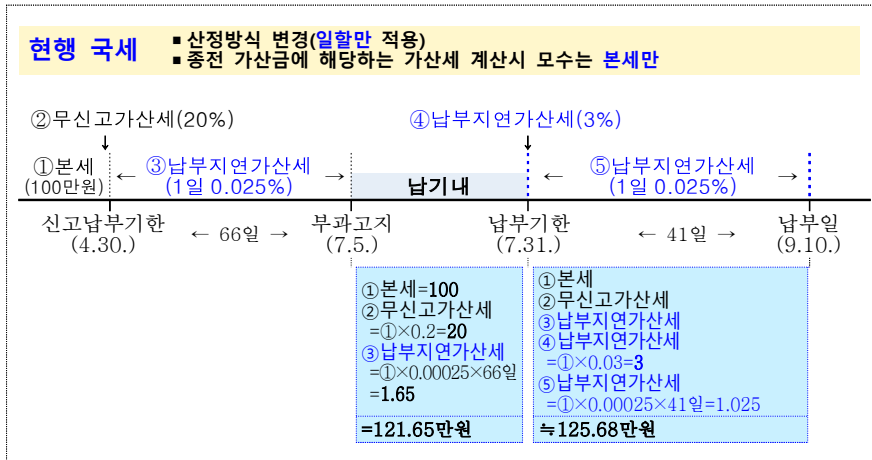
② 가산세 산정 기준액 조정

- 종전 (중)가산금 산정시 기준액은 본세+가산세이나, 가산세로 일원화됨에 따라 기준액을 본세로 조정(국세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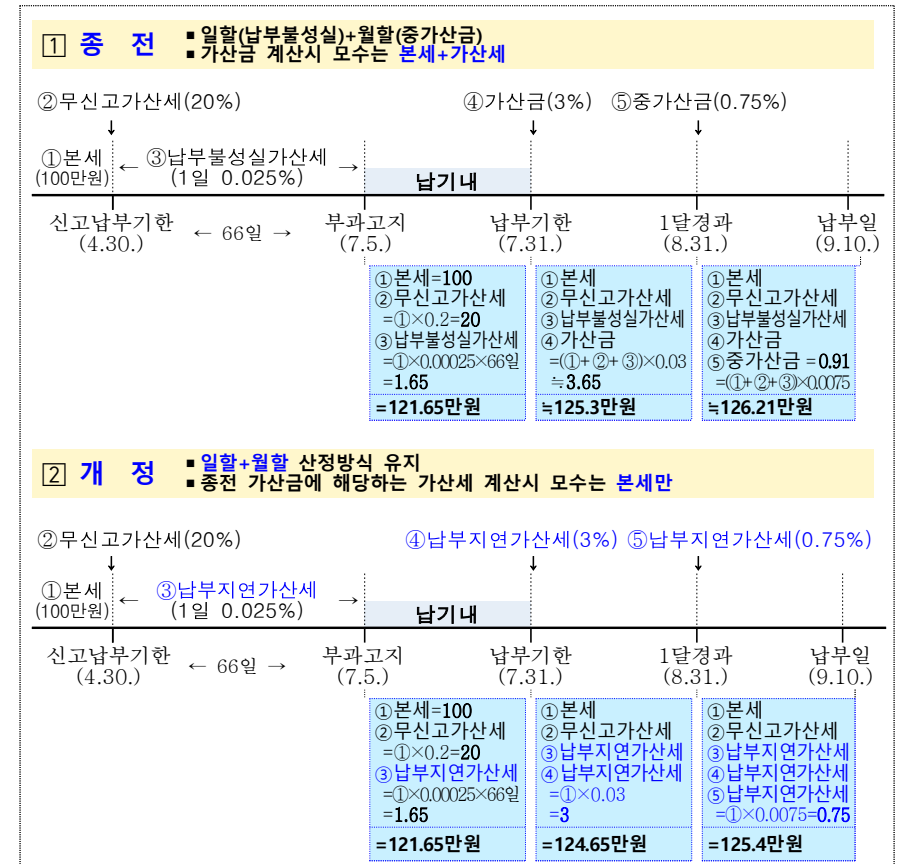
③ 현행 산정방식 유지

- 국세는 가산세(일할), 가산금(1회), 증가산금(월할)을 통합하면서 조속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증가산금을 일할 과세로 변경하였으나,



- 부과고지세목 위주의 지방세에는 일할 적용이 불합리하여 현행 산정방식을 유지(일할+월할)

<개정 전·후 부과 흐름도 및 세부담 비교>



2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분화 및 납세의무 확정시기 명확화

① 납세의무 성립시기 세분화

- (개정배경) 현행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가산세별 성격과 의무위반 시기 등을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

※ 현행규정 : 가산세를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개정내용)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가산세별로 규정

-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가산세 :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때
- 납부지연가산세(중전 납부불성실가산세분)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중전 가산금분)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납부지연가산세(중전 증가산금분) :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
- 그밖의 가산세 :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다만,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가산세를 가산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산할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② 납세의무 확정시기 명확화

- 납부지연가산세 신설 등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별도의 절차없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추가

현 행	개 정
◦ 특별징수 지방소득세 ◦ <신 설> ◦ <신 설>	◦ (현행과 같음) ◦ 기존 가산금·증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 ◦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관련 규정 합리화

① 소멸시효 기산일 합리화 및 법률로 상향

- 소멸시효 기산일 명확화

현 행	개 정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의 다음날	신고후 미납한 경우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 지방세징수권의 행사가능 시기를 명확화(국세일치)
특별징수세액 납부기한의 다음날	그 외의 경우(과세관청이 부과고지한 경우) : 좌동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	(좌 동)

- 현재 시행령(§20)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 기산일 규정을 조세 법률주의에 부합하도록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

② 소멸시효 기간을 구분하는 지방세 기준금액 합리화

- (개정배경) 과세관청이 신고의무 위반을 언제 인지했느냐에 따라 제납자 간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문제 해결 필요

※ 사례) 본세 4,000만원, 신고납부 기한 2020. 4. 30.을 가정

구분	① 2021. 7. 5. 부과	② 2024. 7. 5. 부과
가산세	66만원	1,095만원
총납부세액	4,066만원	5,095만원
소멸시효	5년 적용	10년 적용

본세	←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 →
신고납부기한 ('21.4.30)	부과고지
	① '21.7.5. 부과고지하는 경우 : 총세액 4,066만원 → 시효 5년
	② '24.7.5. 부과고지하는 경우 : 총세액 5,095만원 → 시효 10년

- (개정내용) 기준금액을 가산세를 제외한 본세 금액으로 개정

현 행	개 정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 10년 ○ 그 외의 지방세 : 5년 <신 설>	○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 10년 ○ 그 외의 지방세 : 5년 - 지방세에서 가산세는 제외

□ 적용요령

① 시행시기

- 가산세·가산금 통합과 관련된 개정규정은 ‘차세대 지방세통합 정보통신망’ 구축 다음 연도(2024.1.1.)부터 시행

② 적용요령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이 법 시행일('2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이 법 시행일('24.1.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산금 통합과 관련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시행일('24.1.1.) 이전에 주된 납세자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종전 규정 적용
 -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이 법 시행일('24.1.1.) 이전에 종전의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에 따라 성립한 가산세는 종전 규정 적용
 - (지방세 납세의무의 확정) 이 법 시행일('24.1.1.) 이전에 개정된 납세의무 확정 규정(제35조제1항)*에 따라 세액이 확정된 가산세에 대해서는 제35조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 * 종전과 내용은 동일하며, 1호·2호를 하나의 호에 같이 규정한 것에 불과

③ 유의사항 : '22.2.3. 이후 농특세 가산세 규정 본세와 상이

-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특세는 국세임에도 가산세·가산금 일원화 시행일 유예('20.1.1.→'22.2.3.) * 우리부가 차세대시스템 개통시기까지 유예 요청

❖ 지방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 (의의)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국세)
- (과세표준) △지방세법·지특법에 따라 감면받는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20%, △취득세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한 취득세액의 10%, △레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부칙 규정 추가 유예가 불발되어 '22.2.3. 이후에는 지방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의 납부지연가산세 상이
 - 현재,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본세와 상이한 농특세 가산세 산정 기능을 개발 중(4월말 완료 예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1 기한연장 사유 재해의 명확화 등(영 §6조)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신고·납부 등 기한 연장사유 1. 납세자가 <u>재해</u>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또는 상중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인 경우 ※ 납부기한에 한해 연장 가능 5. 정전,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세입금 수납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6. 지자체금고·수납대행기관의 휴무 등 정상적 신고·납부가 곤란하다고 <u>행안부장관</u>이 인정하는 경우 7. 납세자 장부 작성 대행 세무사 등이 <u>재해</u>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 지방소득세 관련 기한에 한정 8. 그 밖에 1. ~ 6.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기한의 연장사유 명확화 1. 납세자가 <u>재난안전법</u>에 따른 <u>재난</u>*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붕괴사고 등 사회재난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정상적 신고·납부가 곤란한 하다고 <u>행안부장관</u> 또는 <u>지방자치단체의 장</u>이 인정하는 경우 7. 납세자 장부 작성 대행 세무사 등이 <u>재난</u>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8.. (현행과 같음)

□ 개정내용

- 제1호 및 제7호 규정의 ‘재해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개정
 - 대형 화재·붕괴사고, 감염병, 가축전염병 등 **사회재난**이 지방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 상 재난의 종류

종류	범 위
자연 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사회 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개별적 세무행정 마비 등 납세자의 정상적인 신고·납부가 곤란한 **상황의 판단 주체에 지자체장을 추가**하여 세정운영 자율성 제고

□ 적용요령

- 이 영 시행('22.1.1.) 이후 기한연장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1. 납세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2. 납세자나 그 동거가족-----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4.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 등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6. -----

개정 전	개정 후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u>행정안전부장관</u> 이 인정하는 경우	----- <u>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u> -----
7. 「세무사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재해 등을 입거나 해당 납세자의 장부(장부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도난당한 경우(지방소득세에 관하여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통지를 하거나 납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 ----- ----- ----- ----- ----- ----- ----- ----- <u>재난</u> 등으로 피해를 ----- -----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2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 확대(영 § 9)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기한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 ○ 제6조제1호·제2호·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기한연장 사유) 및 이에 준하는 사유 - <신 설> - <신 설> - <신 설>	□ 담보제공 예외 사유 확대 ○ 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 예외 사유 각호에 열거 신설 - (1호) 제6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 (2호)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액·기간·납부이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중대한 위기 - (3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개정내용

-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 사유를 각호로 신설하여 구체적으로 열거 함으로써, 납세자 이해를 높이고 법령을 체계화
 -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납세자 사업의 현저한 손실 또는 중대한 위기* 및 수납대행기관의 휴무 등 정상적 신고·납부가 불가능한 사유 등을 추가함
- * 납부금액, 기간, 납세이력 등을 고려하여 연장기간 내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적용요령

- 이 영 시행('22.1.1.) 이후 납세담보 제공받는 경우부터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6조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와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기한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의 예외사유)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 제6조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6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 납부기한의 연장기간과 납세자의 과거 지방세 납부명세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불복 등 지방세환급가산금 계산 합리화(영 §43②)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지방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국세기본법 시행령(§43의3)에 따른 이자율* 적용 * 기재부령(§19의3) : 연 1천분의 12	☐ 환급가산금 이자율 합리화 ☐ [본문] (현행과 같음) - (단서 신설) 불복·소송 결과 40일 이후 환급 시 1.5배 이자율 적용

□ 개정내용

- 불복 등 결과에 따라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 40일이 경과한 후에는, 국세와 동일하게 환급가산금 이자율을 1.5배 적용하도록 단서 추가

□ 적용요령

- 현행 법령 운영사항을 명문화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국세환급가산금) ②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영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2를 말한다.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법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4 지방세조합의 사무 및 제반사항 규정(영 §3, §82 등)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3) 지자체장의 권한 위탁 고시 ☐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권한 위탁 시 고시의무	☐ 권한 위탁 고시 대상 추가 ☐ 위탁 고시 대상에 지방세조합장 추가
☐ (§82⑦) 포상금 신고방법 등의 규정 ☐ 지자체 : 조례로 정함 ☐ <신 설>	☐ 포상금 신고방법 등 규정 추가 ☐ (현행과 같음) ☐ 지방세조합 : 지자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에 따른 포상금 규정
☐ (§87조의2) <신 설>	☐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장 등 15명 이내 구성 ☐ 위원 위촉 및 회의 구성 등
☐ (§93조의2) <신 설>	☐ 지방세조합의 사무 ☐ 지방소비세 납입 관리 ☐ 고액·상습채납자 명단공개 및 공매 대행, 행정소송 대응 등

□ 개정내용

- 지방세조합 관련 법률 규정의 시행*에 따라 지방세조합의 사무 및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제93조의2 제1항제2호 개정 규정은 '22.2.3., 그 외 조합 관련 규정은 영 공포일 시행

□ 적용요령

- 향후 지방세조합 출범에 따라 관련 규정 적용

2 개정조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전	개정 후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권한 위탁의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 위탁업무, 위탁기간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공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에 고시해야 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신 설>	제87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개정 전	개정 후
	<u>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u>) ① 법 제14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두는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이하 “징수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 사무기구의 장으로 한다. ③ 징수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지방세 체납사무를 담당하는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 2. 제83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④ 징수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법 제151조의2에

개정 전	개정 후
제92조(수당 등)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 7명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수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임·해촉과 징수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84조(제1항은 제외한다)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징수심의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으로, “소속 공무원”은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직원”으로 본다. 제92조(수당 등) <u>지방세심의위원회</u>, 징수심의위원회 ----- ----- ----- ----- ----- 지방세심의위원회, 징수심의위원회 ----- -----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① 법 제15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1.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에 관한 사무 2. 「지방세징수법」 제8조·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과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관한 사무 3. 「지방세징수법」 제71조제5항에 따른 공매의 대행에 관한 사무 4.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위탁·대행하는 사무 5.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공동 대응을 위한 지원 사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지방세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1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개정 전	개정 후
제93조의2(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생략)	제93조의3(과세자료제출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현행 제93조의2와 같음)
제93조의3(세무공무원 교육훈련) (생략)	제93조의4(세무공무원 교육훈련) (현행 제93조의3과 같음)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행정안전부장관, 세무공무원,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소속 공무원 및 법 제127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은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 등”이라 한다)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제9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나 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 소속 공무원(법 제151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 ----- ----- ----- ----- ----- ----- ----- -----

개정 전	개정 후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⑤ (생략)	-----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징수심의위원회는 법 제147조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등 또는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5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영 별표1)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명령사항 위반 등 과태료 ☐ 자동차 인도명령 위반 및 세무공무원 질문검사 거부 등 500만원 이하 과태료 - 1회 위반 : 2백만원 - 2회 위반 : 3백만원 - 3회 위반 : 5백만원 ☐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 -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 - 직전 부과차수의 다음 차수 - <신설>	☐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현행과 동일) ☐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 (현행과 동일) - (현행과 동일) - 3년 이전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에 미반영

☐ 개정내용

- 과태료 가중처분 관련 위반 횟수 산정 시 적발일 3년 이전 부과처분은 가중처분 차수 산정 시 반영 제외함

☐ 적용요령

- 이 영 시행('22.1.1.)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1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②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별표1)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개정안)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단, 적발된 날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지방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1호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나.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108조 제1항제2호	2백만원	3백만원	5백만원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관련 서식 개정[시행규칙 별지 제30호, 제31호]

1 개정개요

개정 전	개정 후
☐ 납세보증서 등 첨부서류 ☐ 납세보증인 또는 등기의무자 등의 인감증명서	☐ 납세보증서 등 서식 개정 ☐ 납세보증인 또는 등기의무자 등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개정내용

- 납세보증서 등의 첨부서류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적용요령

- 이 규칙 시행('22.1.1.) 이후부터 적용

2 개정서식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0호서식]

납세보증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납세자	성명(법인명)	주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납세보증인	성명(법인명)	주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인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업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보증한 총 금액

납세보증에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내역						
주요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위 납세자가 년 월 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 책임 하에 납부할 것을 보증합니다.

년 월 일
납세보증인 (서명 또는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납세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가 납세보증용일 것) 2. 납세보증인의 납부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년 월 일 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권리자					
채 무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등기(등록)의 무 자	성명(법인명)				
	주민(법인,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업소)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등기(등록)관서 귀중 년 월 일 촉탁공무원 발 신 명 의직인					
첨 부 서 류		• 저당권설정계약서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접 수	년 월 일 제 호	접 수		조 사	
		기 입		대 조 확인	
작성방법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본거지를 추가로 적습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을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